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기구 상설화〉
■ 위성곤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389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위성곤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01. 09.
3. 회 부 일 : 2025. 01. 1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동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중앙권한의 단계적 이양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원위원회를 두고,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설치하도록 하였음.

이에 해당 사무기구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및 부처협의, 갈등 조정 등 컨트롤타워 역할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 완성을 위해 지속적인 업무 수행이 필요함.

그러나 동법에서 최초 부칙으로 사무기구의 유효기간을 설정한 탓에 2006년 7월 이후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부칙 개정을 4차례나 반복하고, 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국무총리 훈령으로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이후 출범한 다른 특별자치시도의 지원위원회 사무기구가 상설조직인 것을 고려할 때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상설화함으로써 제도개선 과제 이행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분권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677 4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서 지원위원회 사무기구의 유효기간을 규정한 부칙 제2조를 삭제함으로써, 사무기구를 상설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법률 제16774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u>제2조 (유효기간) 제18조의2의 개정</u> <u>규정은 2021년 6월 30일까지 효력</u> <u>을 가진다.</u>	법률 제16774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u><삭 제></u>

개정안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및 부처협의, 갈등 조정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사무기구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모델 완성에 기여하려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부터 「제주특별법」에 부칙으로 사무기구의 유효기간을 설정함에 따라 2006년 7월 이후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부칙 개정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해 오고 있었고¹⁾²⁾, 현재는 유효기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간의 경과로 제18조의2 규정은 효력이 없는 상황임..

현재 국무총리 훈령에 근거하여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4개의 특별자치시·도를 지원하는 한시기구인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이 통합 운영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와 달리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는 특별법상 사무기구의 유효기간을 두고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 측면에서 사무기구 설치 근거규정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개정안과 같이 구법의 부칙을 삭제한다고 하여 이미 유효기간의 경과로 효력을 상실한 규정의 효력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같은 취지의 조문을 신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의 설치 등) ① 제주자치도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 및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14. (생략)
-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협약 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사무기구의 설치) ①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필요한 사무기구를 둔다.

- ② 사무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제주도 지원위원회 사무기구 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을 인정하나 다 특별자치시·도³⁾⁴⁾⁵⁾와의 형평성을 고

3)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5. (생략)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강원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강원자치도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 7. (생략)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⑥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전북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고 전북자치도가 실질적 지방분권 및 지역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 9. (생략)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⑥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려할 때 사무기구 설치를 임의규정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8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기구 연혁 >

- ① 제주사무처('06.8.~'18. 6.) : 제주특별법상 한시기구 / 3회 연장('11, '14, '16.)
- ② 제주지원단('18.7.~'22.10.) : 총리훈령상 한시기구 / 4회 연장('19.~'22.)
- ※ 제주지원단 운영 중 제주특별법상 사무기구 유효기간도 1회 연장('19.6.~'21.6.)
- ③ 특별자치시도지원단('22.11.~) : 총리훈령상 한시기구로 통합 운영(~'27.12.)

특별자치시도지원단장(국정운영실장 겸임)

부단장(고공 나급, 국조실)

